##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48 발의연월일: 2024. 10. 17.

발 의 자: 박홍근 · 김남근 · 이수진

이건태 • 한정애 • 염태영

임광현 · 윤호중 · 이기헌

민병덕 의원(10인)

#### 제안이유

2024년 3월 기준 국내 외국인 인구는 약 260만명으로 불과 1년전에 비해 약 11%가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다문화 사회의 도래는 이제 한국이 받아들여야 할 변화이며 저출생·고령화 사회를 맞아 향후 이민자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 이에 다문화 가족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이어갈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결혼이민자가 부모 등 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경우 자녀의 양육 지원 또는 자녀가 중증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된 횟수 아래 총 3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민자가「민법」 제974조상 부양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본국에 거주하는 부모를 한국에서 부양하기 위한 장기체류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더라도 받을 수 없어 아픈 부모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임. 이에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민자가 '피부양' 목적으로 장기체류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5조의6).

### 주요내용

- 가. 제10조의2제1항제2호 장기체류자격의 목적 규정에 "피부양"을 추가함.
- 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련, 제25조의6을 신설하여 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피부양자가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법률 제 호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 중 "결혼 등의"를 "결혼, 피부양 등의"로 한다. 제2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6(피부양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 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민법」 제974조제1호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부양 목적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	
(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2
투자, 주재, <u>결혼 등의</u> 목적으	<u>결</u>
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	<u>혼, 피부양 등의</u>
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	
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25조의6(피부양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특칙) ① 법
	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민법」
	제974조제1호의 피부양자에 해
	당하는 사람이 피부양 목적으
	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체류기간 연
	장윽 허가학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 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 으로 정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 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